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030090호

[KB 경북 소상공인 행복보탬 지원사업] 경북 소상공인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참여자 모집공고

경상북도, KB금융,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KB
경북 소상공인 행복보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육아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배려와
인식변화 도모를 위해 도내 소상공인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3. 3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지원대상

- 신청기간 마감 전 당해연도(2025년) 출산 후 육아휴직 한 근로자가 있는
도내 소상공인(중위소득 150% 이내)

신청기간

- 2025.3.31. ~ 5.31.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지역

- 경상북도 내

신청방법

- 신청서 ^①다운로드 및 작성 후 경상북도 「모이소 앱」 ^②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경로: 진흥원 홈페이지(www.gepa.kr) → 지원사업안내 →
모집공고 → 붙임 파일 참조

문의

- 사업 및 신청방법 문의: 소상공인지원팀 ☎ 1800-8730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
(고객의소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문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선정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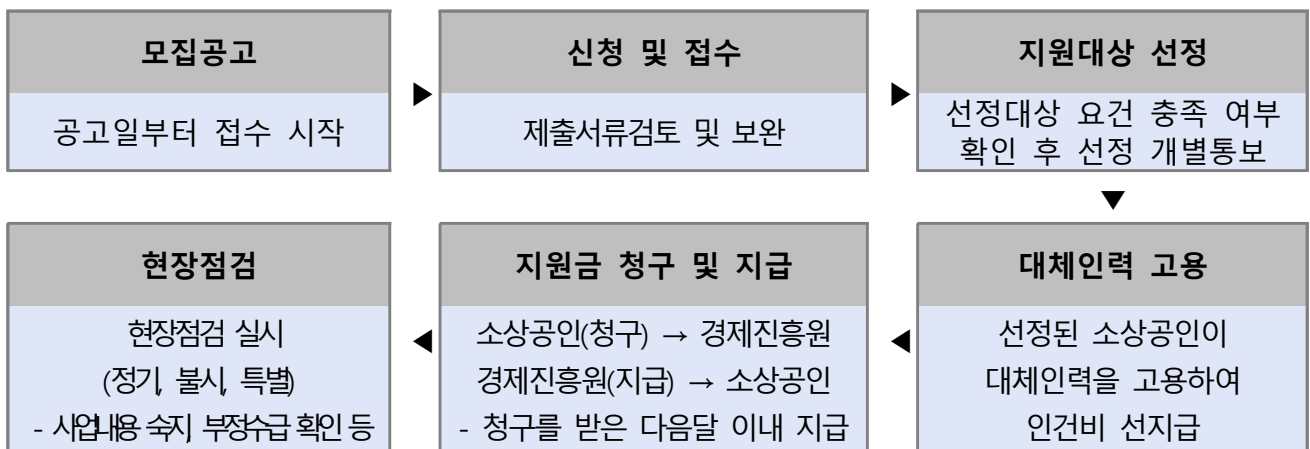
- 개별통보(필요시 접수 홈페이지 공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북 소상공인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 원 대 상 :	신청기간 마감 전 당해연도(2025년) 출산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있는 도내 소상공인(중위소득 150% 이내)
○ 선 정 방 법 :	자격심사(접수순서, 적격여부, 예산범위 등)
○ 사 업 내 용 :	공고문 상세내용 참조
○ 사 업 규 모 :	8개소 정도(예산범위 내 지원)
○ 지 원 금 액 :	예산범위 내 지원 - 연속된 최대 6개월 기간 내 고용한 대체인력 인건비 실지금액 최대 월 2백만원 지원(총 12백만원)
○ 신 청 방 식 :	소상공인 전용 앱 접수(경상북도 모이소 어플 내 소상공인관)
○ 신 청 기 간 :	2025.3.31. ~ 5.31.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단, 접수순 지급으로 인해 예산부족 시 지원금은 조기중단될 수 있음

○ 유 의 사 항	
- 대체인력 지원요건 :	<p>지원사업 선정 후 ~ 25.12.7.(일)까지 발생한 인건비에 한해서 지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정 전 발생한 인건비 지원불가 2) 최대 6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25.12.7. 이후 발생한 인건비 지원불가 3) 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주요 공지사항

- (지원대상) 신청기간 마감 전 당해연도(2025년) 출산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있는 도내 소상공인(중위소득 150% 이내)
- (신청지역) 경상북도 내
- (신청기간) 2025.3.31. ~ 5.31.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 단, 접수순 지급으로 인해 예산부족 시 지원금은 조기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연속된 최대 6개월 기간 내 고용한 대체인력 인건비 실지금액 최대 월 2백만원 지원(총 12백만원)
- (조기종료) 사업예산 소진으로 인해 접수기간 내 신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통보) 신청접수 시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 통보 예정

4. 신청자격

- (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①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② 중위소득 150% 이내 ※ [붙임4] 참조
 - ③ 신청 전 6개월 전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연 매출액이 12백만원 이상일 것
 - ④ 신청 전 6개월 이상 근무 및 25년도 출산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 ⑤ 사업장 주소가 경북에 두고 있을 것
 - ⑥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법인명의로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 근로자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이외의 외국인 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예산의 전체를 지원받음으로써 신청대상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사업장,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 - 기타 위에 준하는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붙임1] 참조
---------	--

5. 대체인력 채용대상 및 지원요건

- (대체인력 정의) 대체인력은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대행하며, 사업자와의 근로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담당
 - 대체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법 준수, 4대보험 가입, 이외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 4대보험 가입문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대체인력 채용제한)
 - 대체인력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함
- (대체인력 지원요건)
 - 25.12.7.(일)까지 발생한 인건비에 한해서 지원, 이후 고용한 인건비는 지원 불가
 - (인건비 수준) 소상공인과 대체인력이 협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며, 고용기간 내 해당연도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함
 - *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계산 및 확인
 - * 고용노동부 '25년 적용 최저임금 기준 시간급 10,030원
 - (근로조건) 주 5일 이하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 (휴식시간 제외)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 근무형태는 전일제, 시간제 근무 모두 가능
 - (제한사항) 1개 사업체에 1명의 대체인력만 지원,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체에 중복지원 불가
- (인건비 지급요건) 근로계약서 및 통장입금 내역서를 확인하고 소상공인이 실지급한 인건비 내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6. 신청서류

□ 신청서류

신청서류	비고
신청서	- [서식 1] 첨부(출력 후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 2] 첨부(출력 후 서명)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www.gov.kr)에서 출력,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가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진 첨부 - 정부 24(www.gov.kr)에서 출력,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 있는)가구원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모두 제출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 신청 시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 (단, 온라인 화면 캡처본 인정하지 않음)
소상공인확인증빙서류 ※ 1), 2) 중 선택	1)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출력 2) 소상공인확인서 대체 증빙서류 ①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민센터 /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②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기간: 직전 사업연도 1~12월) ※ 자격요건 확인, 유효기간 이내 자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모두 제출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력,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가능

7.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방법

① 선정

- (선정대상 및 방법) 신청서 및 필수서류 구비 여부 등 신청요건 및 지원요건을 충족한 출산 소상공인을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 (선정제외)
 - (신청요건 미충족) 신청요건 미충족 또는 서류 미제출자
 - (중복수혜) 타인건비 지원 중복수혜 업체 조회 유관기관 협조 요청
 - * 중복지원 사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 중 해당되는 사업, 경상북도 내 각 시·군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
 - * 수혜기간 및 타지원사업의 인건비 지원 대상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대상)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최저임금법 위반 등 이에 준하는 사항이 있을 시 선정 제외

② 지원금 지급 방법

- (지원금 지급방법) 매월 청구에 의한 지원금 후지급
 - * 필요시 별도의 기간으로 지급 가능
- (지원금액) 최대 월 2백만원(최대 연속된 6개월간)
 - ※ 지원사업 선정 후 ~ 25.12.7.(일)까지 발생한 인건비에 한해서 지원
 - 1) 선정 전 발생한 인건비 지원불가
 - 2) 최대 6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25.12.7. 이후 발생한 인건비 지원불가
 - 3) 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급중단) 다음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지급중단
 - 지원기간 중 선정제외 또는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급중단
 - (기타사항)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지급중단의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 (청구서류) 선정 후 지원금 청구 시 제출서류

청구서류	비고
청구서	- [서식 3] 첨부(출력 후 서명)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 양식첨부(출력 후 서명)
통장입금(인건비) 내역	- 통장실물 사진 또는 계좌거래내역 등 파일/사진 등 첨부 ※ 컴퓨터, 모바일 화면캡처본 무효
청구인 본인 통장사본	- 청구서 상 계좌번호 동일 통장사본
대체인력 고용 확인 증빙서류 (청구일 기준 1주일 이내 발급분)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단, 진흥원이 인정하는 서류)
확약서	- [서식 4] 첨부(출력 후 서명)

8. 현장점검

- (점검시기) 청구기간 내 점검
- (점검내용) 신청 및 청구서류 원본 진위 여부 확인, 지원사업내용 숙지 여부, 대체인력 실제 근무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행여부, 대체인력 업무현황 (직무내용, 범위 등), 작업장 안전, 부정수급 여부 등

9. 유의사항

- 부정수급 및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음

10. 앱 설치 방법

- 하단 QR코드를 통해 설치 또는 구글(앱)스토어 '모이소' 검색 후 설치



11. 참고사항

□ 제출 및 확인서류

- '제출서류' 목록에 기재된 필요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하며, '서식' 파일에 기재 및 서명하여 제출할 것.

<제출서류 준비 시 참고>

- 1) **소상공인확인서(문서제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인정,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하지 않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충족하지 않음)**
 - 온라인: 중소벤처24 (www.smes.go.kr)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오프라인: 발급 불가
- 2) **건강보험 관련 서류**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혹은
 - 오프라인 : 1577-1000(팩스 발급) / 지사 방문
- 3) **기타 행정서류**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붙임1] 지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중인 부동산 중개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	업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 경북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연 평균 매출액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10억원 이하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3] 소상공인 기준

①연평균매출액 + ②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신청서상 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②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기업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 가능

-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 기준	①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②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④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 산정기준 ①과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①을 우선 적용

[붙임4] 중위소득 150% 이내 기준

중위소득 150%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5)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89,000	127,230	58,386	—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 ‘가구원’ 용어 정의

-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의미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조)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확정 가구원으로 인정.
-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봄.
-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함.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이 있는 가구원(소득조회 대상에 포함됨) 외에 자녀 및 미성년 형제자매도 가구원 수에 포함
-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소득이 있는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돼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 서류(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빠짐 없이 첨부해야 함.